

1.약관명: 대출거래약정서(주택도시기금대출:가계용)

2.시행일: 2026.01.01.

3.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: 미적용

주택도시기금대출 가계용 약관 일부개정 전후 대비표

개정전	개정후	비고
<p>대출거래약정서 (주택도시기금대출: 가계용)</p> <p>제6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등</p> <p>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은 서면으로 독촉하고,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본인은 은행에 대한 해당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. 다만,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원금이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경우 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시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방법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일 등을 개인채무자보호법 제6조를 적용합니다.</p> <p>1. ~ 10. (생략)</p> <p>11. 대출을 받은 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<u>4.88억원</u> (구입자금), <u>3.37억원</u>(전·월세자금) 기준으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</p>	<p>대출거래약정서 (주택도시기금대출: 가계용)</p> <p>제6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등</p> <p>① _____</p> <p>_____</p> <p>1. ~ 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11. _____ <u>5.11억원</u></p> <p>_____ <u>3.45억원</u></p>	구입 및 전(월)세자금 순자산 기준 금액 변경
<p>제9조 자산기준 초과 시 가산금리(또는 금리변경) 적용 및 조건변경 제한</p> <p>① 대출을 받은 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자산기준이 초과된 경우 가산금리 또는 금리를 변경 적용하기</p>	<p>제9조 자산기준 초과 시 가산금리(또는 금리변경) 적용 및 조건변경 제한</p> <p>① _____</p> <p>_____</p> <p>_____</p>	

